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0 발의연월일: 2020. 6. 25.

발 의 자: 강기윤·김희국·박성중

이 용・윤한홍・이명수

윤영석 · 최형두 · 구자근

윤재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,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제2조, 제16조, 제16조의2 및 제17조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의3 중 "학생들이"를 "2명 이상의 학생이"로 한다.
제16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- ⑧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1. 회의 일시 · 장소와 안건
- 2.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

제16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16조제8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피해학생"은 "장애학생"으로 본다.

제17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16조제8항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	
같다.	
1. ~ 1의2. (생 략)	1. ~ 1의2. (현행과 같음)
1의3. "사이버 따돌림"이란 인	1의3
터넷, 휴대전화 등 정보통	
신기기를 이용하여 <u>학생들</u>	<u>2명 이상</u>
<u>이</u>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	의 학생이
지속적, 반복적으로 심리적	
공격을 가하거나, 특정 학	
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	
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	
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	
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피해학생의 보호) ① ~	제16조(피해학생의 보호) ① ~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⑧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
	조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
	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	에 따라 관련학생 또는 그 보
	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

⑧ (생략)

제16조의2(장애학생의 보호) ① 제16조의2(장애학생의 보호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

~ ① (생 략) <신 설>

통지하여야 한다.

- 1. 회의 일시·장소와 안건
- 2.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
- ⑨ (현행 제8항과 같음)
- - ~ ③ (현행과 같음)
 -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 여 개최하는 회의의 통보에 대 하여는 제16조제8항을 준용한 다. 이 경우 "피해학생"은 "장 애학생"으로 본다.
- 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 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 ~ ① (현행과 같음)
 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16조제8항 을 준용한다.